

##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두63079 판결

[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, 관리인이 고의,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그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므로 채납처분 등을 속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,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]

### 1. 사안

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이 인가·종결되었으나, 관리인으로서 스스로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음.

세무서(피고) 역시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고, 회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음.

이후 세무서(피고)는 체납세액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,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음.

### 2. 원심의 판단: 원고의 청구 인용

원심은,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압류의 집행권원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니므로 압류는 위법, 무효라고 판단함,

### 3. 대법원의 판단: 원심판결 파기환송

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.

#### 가. 관련 법리

(1)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,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조세채권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, **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은 실권됨.**

(2) **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**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,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,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**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함.** 따라서 **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**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음.

(3)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**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.**

## 나. 구체적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, 피고가 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,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았음.

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이므로,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,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안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.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.

다만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, 회생계획에 기재된 변제기 전 징수유예 기간 중에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.

## 4. 대상 판결의 의의

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,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및 기한 내에 신고를 누락의 경우 실권됨을 명확히 선언하면서도, 조세채권자에게 신고 누락에 과실이 없고, 관리인에게 고의,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.

이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조세채권자는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,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함.

## 관련구성원

이원

변호사

문희춘

변호사

02-316-4406  
wlee@shinkim.com

02-316-4051  
hcmoon@shinkim.com

## 김세종

변호사

02-316-4108  
sejongkim@shinkim.com

---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